

한화갤러리아 ESG 위원회 규정

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

이 규정은 ESG 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 범위)

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, 정관 또는 이사회 규정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제3조(권한)

위원회는 회사의 환경사회지배구조(ESG) 정책과 회사의 ESG 관련 각종 추진 현황 등 제반 사항을 심의 및 의결한다.

제2장 구성

제4조(구성)

- ① 위원회 위원(이하 "위원"이라 한다)은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해임한다.
- ② 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며, 독립이사는 위원 총수의 2/3 이상으로 한다.
- ③ 위원의 임기는 당해 위원의 이사 임기와 동일하며, 임기 만료 기타의 사유로 이사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위원의 자격도 자동적으로 상실한다.

④ 위원의 사임·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제2항의 위원 수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이사회에서 잔여 이사 중에 위원을 선임하여 인원수를 충족하고, 잔여 이사가 없을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를 통해 그 인원수를 충족한다.

제5조(위원장)

- ① 위원회 위원장은 제10조 규정에 의한 결의로 위원 중에 선정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수인의 위원이 공동으로 위원회를 대표할 것을 정할 수 있다.
-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, 위원회의 회의 시 의장이 된다.
-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,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별로 업무를 분장할 수 있다.
- ④ 위원장의 유고 시에는 위원회에서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3장 회의

제6조(종류)

- ① 위원회는 정기위원회와 임시위원회로 한다.
- ② 정기위원회는 매 분기 1회 개최한다.
- ③ 임시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.

제7조(소집권자)

- ① 위원회는 그 위원장이 소집한다. 그러나 위원장의 유고 시에는 제5조 제4항과 같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② 각 위원은 위원장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. 위원장이 정당한 사유없이 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

에는 위원회 소집을 청구한 위원이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.

제8조(소집 절차)

- ① 위원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고 그 7일 전에 각 위원에 대하여 문서(전자문서를 포함한다), 모사전송기(FAX), 유선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
- ② 위원회는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제1항의 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열 수 있다.

제9조(의안 제출)

- ① 위원회 상정 의안과 그 제안 이유는 각 해당부서에서 작성하여 위원회 간사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.
- ② 간사는 전항 접수 의안의 문안 검토를 거쳐 이를 위원회에 부의한다.

제10조(결의 방법)

- ① 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로 한다. 이 경우 위원회는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위원이 음성을 동시에 송·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.
- ② 위원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. 이 경우 해당 위원은 재적위원 수에서 제외한다.

제11조(부의 사항)

- ① 위원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.
 1. ESG 정책 활동 관련 중장기 정책 심의
 2. ESG 정책 활동 검토 및 실행계획 심의
 - E(환경) 관련 정책 활동 검토 및 정책 목표 심의

- S(사회) 관련 정책 활동 검토 및 정책 목표 심의
 - G(지배구조) 관련 정책 활동 검토 및 정책 목표 심의
 - 3. ESG 활동에 대한 정기(연 1회), 수시 평가 및 개선
 - 4. 기타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일체 사항
- ② 위원회의 보고 사항은 다음과 같다.
1. 국내외 ESG 평가 결과 및 ESG 개선 사항
 2.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보고
 3. 기타 이사회 및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③ 전항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령 및 이사회 운영규정 등에 의해 또는 위원장이 별도의 이사회 승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위원회가 결의하지 않고 이사회에 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다.

제12조(관계인의 의견청취 등)

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임·직원 또는 외부인사들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,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다.

제13조(의사록)

- ① 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한다.
-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, 경과요령, 그 결과,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 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.

제14조(보고)

- ① 위원회는 결의된 사항을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- ② 위원회 부의사항 중 위원회가 회사의 중요사항으로서 이사회에 부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사항은 이를 이사회에 부의할 수 있다.

제15조(간사 및 위원회 지원)

- ① 위원회에는 간사 1인과 ESG 사무국을 둔다.
- ②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한다.
- ③ ESG 사무국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구성원의 자료 수집 등의 요구 사항을 처리하기 위한 전반적인 위원회 업무를 지원한다.

제16조(규정의 개폐)

이 규정의 개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한다.

부 칙 (2024.08.08)

1. 이 규정은 2024년 8월 8일부터 제정 시행한다.

부 칙 (2026.03.26)

1. 이 규정은 2026년 3월 26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
2. (독립이사에 관한 경과조치) 제4조 개정규정은 2026년 7월 23일부터 시행한다.